

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

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20조 및 제24조,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8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공고내용

1 개요

-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변경

※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8조

2 대상

- 대상사업 : (사업주) 위탁훈련

- 전체 위탁훈련에 적용(집체, 원격 모두 포함)

※ 사업주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직업훈련카드,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등은 기업 편의를 고려하여 훈련기관에 지원금 지급 가능

3 변경 적용사항

1 사업주의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변경

-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先 납부하고, 훈련종료 후 자부담(기업규모별 10%~60%)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

기 존('17.1월~)	변 경('24.1월~)
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는 방식 2가지 존재	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는 방식 통일
① 전부납부형: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납부하고 훈련기관은 훈련비를 대신 환급신청한 후 사업주에게 전달	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전액 납부하고, 훈련기관은 훈련비 신청만 대신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사업주에 직접 환급
② 일부납부형: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부담금만 납부하고 훈련기관은 훈련비를 대신 환급신청하여 직접 수령	

②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 신청주체 및 지급방식 개편

- 위탁훈련에 참여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직접 공단으로 신청하거나,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

기 존('17.1월~)	변 경('24.1월~)
훈련기관이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	사업주 신청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한 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

- 사업주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, 온라인(직업훈련포털)으로 신청하거나, 공단의 신청 대행 서비스(오프라인) 활용
- ※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을 활용하여 직접(방문/팩스/우편 등) 공단으로 비용신청 필요

4 유의사항

□ (적용시기) '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적용

- ※ 사업주가 직업훈련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개발 진행 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단으로 오프라인 신청 필요

□ (사전준비)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필요

-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을 대신할 경우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(www.hrd.go.kr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함
- ※ 훈련기관에서는 직업훈련포털에 사업주의 계좌번호가 등록(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)된 경우만 훈련비용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(홈페이지→사업주훈련→사업주 계좌등록)
- ⇒ 훈련기관에서 비용신청을 대신할 경우 훈련 참여사업장에 미리 안내 필요

□ (첨부서류) 지원금 신청시 훈련비용 납부에 대한 증빙 필요

-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할 경우 납부한 훈련비 전액*에 대한 증빙자료(계산서, 계좌이체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
- ※ 총 비용신청인원에 대한 지원금 기준금액고시 제12조2항 및 제13조5항제1호) 이상을 납부

□ (지원인원한도 안내) 훈련기관은 원격훈련 과정별 연간 지원인원한도 초과로 정부지원금이 15%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사전 안내